

공 보

제601호 2017. 7. 12.(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86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4
거창군 조례 제238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9
거창군 조례 제2388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16
거창군 조례 제2389호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20
거창군 조례 제2390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23
거창군 조례 제2391호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36
거창군 조례 제2392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42
거창군 조례 제2393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50
거창군 조례 제2394호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거창군 조례 제2395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64
거창군 조례 제2396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거창군 조례 제2397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거창군 조례 제2398호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0
거창군 조례 제2399호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93
거창군 조례 제2400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거창군 조례 제2401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거창군 조례 제2402호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27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08
거창군 규칙 제1228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10
거창군 규칙 제1229호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128
거창군 규칙 제1230호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49
거창군 규칙 제1231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88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168
거창군 고시 제2017-91호 도로명주소 고시	170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809호 분묘개장 공고(2차) 172
 거창군 공고 제2017-816호 보상계획열람공고 【거창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소로3-94호선) 개설공사】 173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86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원봉사실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
 - 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61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업무에 대한 군민 신뢰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내용에 위원회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 제명 변경함.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목적규정을 변경함(안 제1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변경함(안 제2조)

○ 위원회 명칭 및 조 제목 변경, 위원 수를 규정(민간위원 1/3이상)

라. 조례 내용 중 미비점에 대하여 자구 수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마. 위원회 관련 자구 수정함(안 제5조)

○ 회의 소집 절차 및 미비한 내용 보완

바.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구 조례 제2조·제3조, 제11조~제13조)

○ 기금의 재원·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 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8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24.~5.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완료(5): 거제, 김해, 창원, 통영, 창원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8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23조에 제6항·제7항·제8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거창군 조례 제224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u></p> <p><u>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u></p> <p><u>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u></p> <p>제12조(복장 등) ① (생략)</p> <p>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 <u>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②~③ (생략)</p> <p><u>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u></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p> <p>제23조(특별휴가) ① <u>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u>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u>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30 667 778 705"><신 설></p> <p data-bbox="172 853 767 891">부칙(조례 제2248호, 일부개정 '15.6.10.)</p> <p data-bbox="630 898 778 936"><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26 293 1417 421">1. <u>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u> <li data-bbox="826 427 1417 555">2. <u>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li data-bbox="826 562 1417 645">3. <u>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 data-bbox="810 667 1417 795">⑧ <u>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 data-bbox="810 853 1417 1160">부칙(조례 제2248호, 일부개정 '15.6.10.)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u>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u></p>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65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장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8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7.4.25.)으로 출장공무원 규정(제4조의2) 신설로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으로 삭제함

나.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승인 강화(안 제23조제1항)

- (현행)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변경) 군수는 주어야 한다.

다. 육아시간 남녀공무원에게 부여(안 제23조제4항)

-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 ⇒ (변경)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부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만 가능)

라. 자녀입영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6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그 날 1일 휴가 부여

마. 격무, 주요 공적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7항)

- 재해·재난 등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 등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 허가

바.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 규정 신설함(안 제23조제8항)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

사.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경남도내 지자체와 맞춤(안 별표 4)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2일 ⇒ (변경) 3일

아. 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종전조례(조례 제2248호)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7조의3제1항·제2항·제7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그 밖에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02.~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23조제8항)

(6) 전국 개정현황: 격무, 주요 공적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

- 경남(밀양, 산청, 함양), 서울시, 경기도, 광역 지자체 대부분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88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66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등 수정함(안 제1조·제3조·제5조)
- 나.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예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구 제7조)
- 라. 상위법령 중복·재기재에 불과한 위원회 규정 삭제(구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6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16.~5.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 현황

- 입법예고: (5개시)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5개군) 하동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89호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거창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거창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의안 번호	2017~67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17.3.28.시행)함에 따라,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소액 군세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
-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이관(종전 조례 제7조 ⇒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4. 16.~5.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 현황
 - 입법예고: (6개시)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5개군) 하동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0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2조 제7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등 1건당 3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제4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등과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지방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시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상별 포상금 지급대장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 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정보 제공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p>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p> <p>○ 성 명: ○ 생년월일: (남/여)</p> <p>○ 전화번호: </p> <p>○ 주 소: </p>							
<p>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p> <p>○ 성 명: ○ 생년월일: (남/여)</p> <p>○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p> <p>○ 주 소: </p> <p>○ 사업장소재지: </p>							
<p>3. 제공 정보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p>							
<p>년 월 일</p> <p>제 보 자: (서명 또는 인)</p> <p>귀하</p>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채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						
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4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연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명세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급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보 자		구분	세목	납기	징수액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 급 (주 소)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 구분란에는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은세원 발굴 등을 표시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 자 재 무 과 장 신 영 수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68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13.1.1.)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 일반적인 위임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위임사항
- 다.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한도·신청·방법, 환수를 정함(안 제3조~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위임사항
- 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 기능, 구성,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나. 예산조치: ‘17년도 예산 8,500천원 기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29.~4.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항목 추가함)

(6) 도내 개정완료: 거제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1호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군 장난감은행”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대여하거나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거창군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 ② 군수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
2.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회원 등록)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매년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연회비의 반환기준 및 절차 등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연회비의 면제) 군수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은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등 또는 장난감은행의 시설물·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
2.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창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회원이 등록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장난감등을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계정(아이디)이나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장난감등의 대여 기간과 수량,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장난감은행 설치, 장난감 구입
-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1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450	-	-	-	-	450
세출 군비(a)	450	-	-	-	-	450
세입 군비(b)	450	-	-	-	-	450

3. 관련 의견

- 장난감은행 설치를 통해 장난감 무료대여와 유아놀이 공간 제공으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장난감은행 리모델링: 250백만원
- 기자재 및 장난감 등 구입: 200백만원

거창군 장남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17~59
----------	---------

발의일자	2017. 6. 3.
발 의 자	박희순의원외 명

1. 제안이유

○ 거창군 장남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위치(안 제3조)
- 라. 운영 및 기능(안 제4조, 안 제5조)
- 마. 회원 등록 및 의무(안 제6조, 안 제7조)
- 바. 연회비 납부 및 반환, 면제(안 제8조, 안 제9조)
- 사. 이용제한(안 제10조)
- 아. 회원 등록 취소(안 제11조)
- 자. 대여기간 및 수량 등(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136조, 제139조, 제144조
- 나. 예산조치: 2017년 45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6. 1.~6. 7.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2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발생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거창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은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거창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별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3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 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의 임차·구입
 - 라. 군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마.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군 소유·관리 시설물 보수·보강, 철거
 -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등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가.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물자, 자재의 구입 및 장비 임차·구입
 - 나. 감염병 방지 선별 진료소 설치·운영, 방역용품 및 자가 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구입
 - 다. 가축전염병 방지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운영(인건비 포함) 등
-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가. 상담인력 인건비 및 활동비
 - 나. 상담관련 출장경비 및 물품 구입비 등
- 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70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함(종전 조례 제2조~제4조, 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

- 기금의 재원, 장기예치금액, 회계관리, 회계공무원, 위원회 심의사항,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6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9조·제13조

「지방회계법」 제46조

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정함(안 제2조)

-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발생 이자: 군금고에 예치·관리하고, 해당연도 잔액은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관리

다.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별표)

- 지역별 재난 특성을 반영하여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11.9.9.시행)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위원의 자격·수·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 직무, 회의 등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1.~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개정현황

- 완료(14): 거제, 진주,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통영,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함안, 창원, 합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3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거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화재취약계층"이라 한다)가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비
 - 관련조문: 제2조,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	30	30	30	30	30	150
세출	국 비					
	군 비	30	30	30	30	30
	소계	30	30	30	30	30

3. 관련 의견

-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은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생활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방시설법」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을 우선설치 대상으로 정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비: 30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17~71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나.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

라.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지원 신청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17년 예산 3천만원 추경 확보예정('18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01.~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서식에 성별 항목 추가함)

(6) 전국 조례 제정 현황

○ 제정(4): 산청군, 정선군, 군위군, 공주시

○ 입법예고(1): 태백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4호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조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제2장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통합지휘소”를“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통합지휘소”를“통합지원본부”로 “전염병”을“감염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통합지휘소”를“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을“통합지원 본부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유형별대응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의한”을“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책임자로 구성한다.

제6조, 제14조 조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23조 제목 및 본문 중“통합지휘소”를 각각“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통합지휘소장”을 각각“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목“(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를“(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장”를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통합지휘가”를 “총괄·조정 및 지원이”로 한다.

제24조 중 “제5조제2항·제3항”을 “제5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u>재난 안전대책본부장</u>이 재난현장을 <u>총괄·지휘</u>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u>통합 지휘소</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u>총괄·지휘</u>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2. (생략)</p> <p>3. "<u>현장지휘관</u>"이란 재난현장에서 <u>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이하 "통합지휘소장"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무원</u>을 말한다.</p> <p>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u>지휘·통제</u>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거창군 <u>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장</u>(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p> <p>1.~4. (생략)</p> <p>제2장 <u>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u></p> <p>제4조(<u>통합지휘소 설치·운영</u>)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p>	<p><u>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u>-----<u>총괄·조정 및 지원</u>-----<u>통합 지원본부</u>----- -----</p> <p>제2조(정의) ----- -----</p> <p>1.----- ----- <u>총괄·조정 및 지원</u>----- 2. (현행과 같음) <삭 제></p> <p>3. ----- ----- ----- -----</p> <p>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u>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u>----- ----- ----- ----- ----- 1.~4. (현행과 같음)</p> <p>제2장 <u>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u></p> <p>제4조(<u>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u>) ① ----- -----</p>

현 행	개 정 안
<p>발생시,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이하 “<u>통합지휘소</u>”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u>통합지휘소</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5. (생략)</p> <p>6. 신종 <u>전염병</u>의 최초 발생 및 법정 <u>전염병</u>이 집단 발생된 경우</p> <p>7.~8. (생략)</p> <p><u>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u>통합지휘소</u>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p> <p>1.~7. (생략)</p> <p>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통합지휘소</u> 내에 <u>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u>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p> <p>④ 본부장은 제3항에 <u>의한</u>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p> <p><u>제6조(업무연락관 파견)</u> 본부장은 <u>통합지휘소</u>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u>통합지휘소</u>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p>	<p>----- ----- ----- ----- ----- -----<u>통합지원본부</u>-----<u>통합지원본부</u>-----</p> <p>② ----- -----<u>통합지원본부</u>-----.</p> <p>1.~5. (현행과 같음)</p> <p>6.-----<u>감염병</u>----- <u>감염병</u>-----</p> <p>7.~8. (현행과 같음)</p> <p><u>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책임자로 구성한다.</u></p> <p>② <u>통합지원본부</u>-----</p> <p>1.~7. (현행과 같음)</p> <p>③ -----</p> <p>-----<u>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유형별대응반</u>-----</p> <p>④-----<u>다른</u>-----</p> <p>-----</p> <p><u>제6조(업무연락관 파견)</u> -----<u>통합지원본부</u>-----</p> <p>-----<u>통합지원본부</u>-----</p> <p>-----</p>

현행	개정안
<p>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p> <p><u>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u></p> <p><u>② 통합지휘소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u></p> <p>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 재난: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p> <p>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 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p> <p><u>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u>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u>통합지휘소</u>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u>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장</u>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p><u>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u></p> <p><u>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장은</u>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장은</u>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u>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u>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p>	<p>-----</p> <p><삭제></p> <p><u>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u> -----<u>통합지원본부</u>-----</p> <p>-----</p> <p>-----</p> <p>-----<u>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u>-----</p> <p><삭제></p> <p><u>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u>-----</p> <p>-----</p> <p>-----</p> <p><u>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u> -----</p>

현행	개정안
<p>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u>통합지휘소</u>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u>통합지휘소장</u>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u>통합지휘소</u>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p> <p><u>통합지원본부</u>-----</p> <p>② <u>통합지원본부의 장</u>-----</p> <p><u>통합지원본부</u>-----</p> <p>-----</p>
<p>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u>통합지휘소장</u>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통합지휘소장</u>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p> <p>-----</p> <p>-----</p> <p>-----</p> <p>-----<u>통합지원본부의 장</u>-----</p> <p>② <u>통합지원본부의 장</u>-----</p> <p>-----</p> <p>-----</p> <p>-----</p>
<p>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u>통합지휘소장</u>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u>총괄·지휘</u>하여야 한다.</p>	<p>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u>통합지원본부의 장</u>-----</p> <p>-----</p> <p>-----</p> <p>-----<u>총괄·조정 및 지원</u>-----</p>
<p>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u>통합지휘소장</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p> <p>-----</p> <p>-----</p> <p>-----</p> <p>-----</p> <p>-----</p> <p>-----<u>통합지원본부의 장</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u>통합지휘소장</u>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p>	<p>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u>통합지원본부의 장</u>-----</p> <p>-----</p> <p>-----</p> <p>-----</p>
<p>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략)</p>	<p>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u>통합지휘소장</u>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3조(<u>통합지휘소</u> 철수) <u>통합지휘소장</u>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u>통합지휘</u>가 필요 없게 된 경우, <u>통합지휘소</u>를 철수시킬 수 있다.</p> <p>제24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u>통합지휘소장</u>에게 위임한다.</p> <p>1. <u>제5조제2항·제3항</u>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p> <p>2.~10. (생략)</p>	<p>② <u>통합지원본부의 장</u>----- ----- ----- -----</p> <p>제23조(<u>통합지원본부</u> 철수) <u>통합지원본부의 장</u>-----<u>총괄·조정 및 지원</u>이-----<u>통합지원본부</u>-----</p> <p>제24조(권한의 위임) ----- -----<u>통합지원본부의 장</u>----- -----</p> <p>1. <u>제5조제3항·제4항</u>----- -----</p> <p>2.~10. (현행과 같음)</p>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5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거창목재문화 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3-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공예 체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목공예 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4. 그 밖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3. 편의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시설 등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임시 휴장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체험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액
2.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관리 및 운영)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공 체험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체험시간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대 품 (기계작업)	4시간 기준	3,000	2,000	※ 작품 1점당 체험료
중 품 (공구작업)	4시간 기준	2,000	1,500	
소 품 (단순작업)	4시간 기준	1,000	500	

※ 체험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2.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3. 이용객 중 인솔자(부모 포함)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
4. 위 체험료는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한다.

[별표 2]

시설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체험시설	4시간	50,000원	
	1일	100,000원	
기획전시실	1일	100,000원	

1. 체험시설은 이용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이용료 100,000원의 범위에서 시간당 10,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체험시설 및 기획전시실의 이용료 감경은 다음과 같다.
 - 가. 5일 이상 이용 시: 20퍼센트 감경
 - 나. 10일 이상 이용 시: 30퍼센트 감경
 - 다. 20일 이상 이용 시: 50퍼센트 감경
3. 체험시설은 목재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용시간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이용을 제한한다.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여)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 []에는 이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목공체험실(초급)	목공체험실(중·고급)	기획전시실
	이용인원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거창목재문화 체험장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운영·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손해배상금 등
- 관련조문: 제1조, 제11조, 제1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도비						
세출	군비		66.6	150	150	150	150	666.6
	소계		66.6	150	150	150	150	666.6
	총 비용		66.6	150	150	150	150	666.6

3. 관련 의견

-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목재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7년 하반기(7월~12월) 운영비: 66,627천원
 - 인 건 비: 14,127천원
 - 일반운영비: 46,500천원
 - 기 타: 6,000천원

작성자: 산림과장 이 응 록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17~73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거창목재문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구성: 15개 조문

나.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휴장일, 관람 및 운영시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 운영시간: 3월~9월 09:00~18:00, 10월~다음해 2월 09:00~17:00

라. 체험료 및 이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1조)

○ 목공체험프로그램 체험료(별표 1), 시설 이용료(별표 2)

마. 행위 및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바.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7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9조·제144조

나. 예산조치: '17년 1회 추경예산 66,627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21.~4.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법제처 입법건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72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과 설치 목적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함

- (현행)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 ⇒ (변경)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명칭 변경함(제1조, 제4조~제6조, 제8조·제9조, 제12조, 제14조~제16조, 제18조·제19조, 제22조~제24조)

- 통합지휘소 ⇒ 통합지원본부
- 통합지휘소장 ⇒ 통합지원본부의 장

다. 현장지휘관 규정 삭제함(제2조제3호, 제2장 제목, 제7조, 제8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12.30.개정) 제16조제4항 현장지휘관 규정 삭제(법 삭제 이유: 법 제52조에서 재난현장 긴급구조 활동에 관한 현장지휘를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삭제, 통합지원본부의 설치목적이 지휘⇒지원·수습으로 개정된 내용과 의미 상통)

라.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목적 변경함(제1조·제2조, 제16조, 제23조)

- 총괄·지휘 ⇒ 총괄·지원 및 조정

마.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변경함(안 제5조제3항)

- (현행) 3개반(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지지원반)
- ⇒ (변경) 8개반(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유형별대응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1.~5.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개정 현황

○ 완료(5): 김해시, 사천시, 하동군, 창녕군, 산청군

○ 입법예고(2): 양산시, 통영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6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를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항 중 “가로수업무”를 “도시림등업무”로 한다.

제14조 조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로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계획 등 7.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p>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군의회 의원 	<p>제1조(목적)-----제20조의 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p> <p><삭 제></p> <p>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협약)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1.~6.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 1.~5. (생략)

제11조(식재기준) ① (생략)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④ (생략)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협약) ① -----

 도시림등업무-----

- 1.~6. (현행과 같음)
- ② -----도시림등업무-----

- 1.~5. (현행과 같음)

제11조(식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림등업무-----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부담) ① -----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30.)

③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도시림등업무-----

-----도시림등업무-----

②~⑤ (현행과 같음)

⑥ -----

---도시림등업무-----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부담금의 징수) -----

<삭 제>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74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필수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가로수 위원회를 그 위임취지와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근거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삭제하여 불편·부담없는 조례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위임조례 정비과제

2. 주요 내용

가. 위임 근거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나.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변경함(안 제4조)

○ 명칭: 가로수위원회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 심의사항 추가: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 제거하는 사항

다. 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하여 군수의 권한 침해 소지 없앴(안 제5조)

라. 법률 위임 없이 조례에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안 제14조제3항)

○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 삭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18.~5. 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7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제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수수료는”을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립·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2. (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u><단서 신설></u></p> <p>4.~6. (생략)</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③ (생략)</p> <p>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u></p> <p>⑤~⑥ (생략)</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② (생략)</p> <p>③ <u>수수료</u>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1.~2. (현행과 같음)</p> <p>3. ----- ----- ----- ----- ----- ----- <u>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을 말한다.</u></p> <p>4.~6. (현행과 같음)</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u><후단 삭제></u></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수수료</u>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 ----- ----- ----- -----</p>

<p>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p>	<p><삭 제></p>
<p>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⑥~⑦ (생략)</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법 제15조-----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p>	<p><삭 제></p>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p> <p>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등을 이행할 것</p> <p>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p>	<p>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p> <p>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립·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p> <p>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p> <p>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p>	<p><삭 제></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군수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삭 제></p> <p>②~③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75
----------	---------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3호 단서) ※ 행자부 법령위임조례 정비

○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

나. 상위법 위배소지 조항 및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9조제5항, 제13조 제4항·제5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5.~4.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8호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농도가 『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군민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7~60
----------	---------

발의일자	2017. 6. 3.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외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다.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규제개혁담당), 환경과(환경정책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6. 3 . ~ 6. 8.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전국 제정완료(1): 강원도 영월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399호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의안 번호	2017~61
----------	---------

발의일자	2017. 6. 3.
발 의 자	최광열 의원 외

1. 제안이유

- 「사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개설을 위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함(안 제2조)
 -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차선평폭 3.0미터, 길어깨 0.5미터)이상의 도로 구조기준으로 적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건설과(도로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6. 3. ~ 6. 8.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완료(7): 거제, 김해, 사천, 고성, 남해, 하동, 함안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400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조례 제2297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칙(조례 제2297호, 일부개정'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부칙(조례 제2297호, 일부개정'15.12.10) <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u> <u>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u></p>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69
----------	---------

제출연월일	20170 6. 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민법」 개정('13.7.1.)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 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난 '15.12.10. 조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 ('13.7.1.) 금치산·한정치산 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법령부적합 기획정비과제(전국689건)

2. 주요내용

가.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함(안 조례 제2297호 부칙 제2조)

○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법률 제10429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개정 2011.3.7. 시행 2013.7.1.>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18.~4.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정비대상(23): 정비완료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401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생 략)</p> <p>1. ~ 5. (생 략)</p> <p>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 ----- -----.</p> <p>② (현행과 같음)</p>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58
----------	---------

발의일자	2017. 6. 3.
발 의 자	박희순의원 외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5조제1항제6호)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부터 제42조 까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6. 1 ~ 6. 7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조례 제2402호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의원"을 "경남도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경우"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그"를 "심의회"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략) 1. ~ 3. (생략) 4. <u>기타</u>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u>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u></p>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② -----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시·도의원</u>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시·도의원</u>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u>기타</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u>각 호의 경우가</u>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 <u>경남도의원</u> ----- ----- 2. ----- ----- <u>경남도의원</u> ----- ----- 3. <u>그 밖에</u> ----- ----- ----- ----- ② --- <u>각 호</u>----- ----- ----- ----- ----- -----</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u>폐질등급</u>"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 "<u>장애등급</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략)</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p>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생략)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생략)

1. ~ 3. (생략)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② (생략)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심의결과에 따라 -----

제10조(심의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

----- 심의회 -----.

다만,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제15조(심의회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회의 수당등) -----

그 밖에 -----.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57
----------	---------

발의일자	2017. 6. 3.
발 의 자	박희순 의원 외

1. 제안이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안 제3조제2항)

나.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1항)

다. 보상심의회 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6. 1.~6. 7.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다.

거 창 군 수 양 등 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규칙 제1227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의안 번호	2017~34
----------	---------

제출일자	2017. 5. 29.
제 출 자	민원봉사실장

1. 폐지이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위임근거 조문이 삭제되고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적용 시행하면 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89조·제90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제61조·제6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24.~5.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규칙 제1228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 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연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구·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금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기분	책호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 자	담 당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 자	담 당	과 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가산 금	성명	성별	주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m²)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00세	00세	00세	00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담당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원) (₩)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성별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성별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장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심사청구, 이의신청)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조세심판원 법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당사자	청구인					처분청
	주소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		
불복경위	제출 연월일	제출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청구구분	결정연월일	각하	기각
	1. 조세심판원 2. 법원	1. 이의신청	년 월 일			
		2. 심사청구	년 월 일			
3. 소송제기		년 월 일				
처분내용	세목	과표	세액	연도(기)분	체납여부	고지연월일
	처분 사유					
불복내용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44
----------	---------

제출연월일	2017. 5. 29.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로 「지방세징수법」(17. 3. 28. 시행)을 제정하여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맞게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제4조)

나. 군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환급금 처리와 지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이 규칙 중 종전의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보통징수·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등에 관한 조문과 서식은 이 규칙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58조,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26.~5.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제1호~제4호, 제7호·제9호서식에 성별항목 추가)

(6) 도내 개정 현황

- 입법예고: (5개시)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5개군) 하동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규칙 제1229호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창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군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

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거창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서 군세 영수필 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군세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심의를 경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연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시·군)		구(시·군)		외 명		
적요			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포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연도
 결의연월 : 연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 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연도 합계															
소계															
〇〇세															
〇〇세															

297mm×210mm(백상지 80g/㎡)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 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 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 확인</p>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확인</p>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상태 확인</p> 1. 가옥: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그 밖에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재조사 확인</p>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그 밖의 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17~46
----------	---------

제출연월일	2017. 5. 29.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군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8조)
- 다. 군세의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체납액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2조)
- 라. 결손처분,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06조,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 예고

(가) 예고기간: '17. 4. 26.~5.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제9호서식에 성별항목 추가)

(6) 도내 제정 현황

- 입법예고: (6개시)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5개군) 하동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규칙 제1230호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공보 또는”을 “공보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군의 공급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 ----- ----- ----- -----</p>
<p>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p> <p>1.~5.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정할 수 있다.</p>	<p>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 ----- -----</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조제1항 단서----- ----- -----</p>
<p>제6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①----- ----- -----군 공보와----- 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거창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총자본비율	(7)	
- 고정이하여신비율	(7)	
- 자기자본이익률	(6)	
- 대손충당금적립율	(1)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4)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48	제출일자	2017. 5. 29.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이 재정부분(「지방재정법」)과 회계부분(「지방회계법」)으로 분법('16.11.30.시행) 되어 이 규칙의 상위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조항에서 위임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15.~4.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7월 12일

거창군 규칙 제1231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국가안전관리계획”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은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한다. 단,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 제4조제3항

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의 용자(이하 “용자”라 한다)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용자신청) ①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용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용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내 금융기관”을 “기금 예치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외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u>」----- -----</p>
<p>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u>지방세법</u>」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u>국가안전관리계획</u>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 ② -----에 따라----- <u>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u>-----</p>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신 설></p> <p>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p>	<p>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은 기금결산 후 1개월-----</p>
<p>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p>	<p>제5조(융자의 조건 등) <삭 제>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기간은</p>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용자신청) ①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3(용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용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자결정통지서를 신청인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관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용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제7조(상환기관의 연장) ① -----
-----그 밖에-----

-----범위-----

② -----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제8조(용자업무의 위탁) ① -----

-----기금 예치 금융기관-----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출납내역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장부의 비치) -----

<삭 제>

<삭 제>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용자금 사용계획서

1. 용자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2. 재산보유 및 소득상황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그 밖에) : 원
- 월 소 득 : 원
- 그 밖의 사항 :

3. 용자금 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 위 치 :
 - 용 도 :
 - 면 적 :
- 자금구분 :
- 세부내역 :

4. 자금상환계획

5. 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용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거창군수 귀하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 통지서

1. 용자대상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 난 위험시설	시 설 명			
	위 치			
	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긴급대피, 이주		

2. 용자결정내용

자 금 용 도	총사업 (이주)비	용 자 신청액	용 자 결정액	용 자 조 건		대출취급 기 관
				대출기간	이 자	
	만원	만원	천원	년 거치 년 상환	변동금리 퍼센트	

- 비고) 1. 연체이율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용자신청자는 용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용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기금운용관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_____ , 계좌번호(_____)

(단위 : 원)

일 자			적 요	회 차	불입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용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치기간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퍼센트)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용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치기간				이 자 수입액	비고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 치 기 간	이 율 (퍼센트)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50
----------	---------

제출일자	2017. 5. 29.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법정적립금 산출기준 삭제함(안 제2조)

나.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조항 신설(안 제4조제1항)

다. 용자신청 조항 신설함(안 제5조의2)

○ 신청서식과 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함.

라. 용자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에 관한 규정 신설함(안 제5조의3)

○ 용자결정통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

마. 그 밖에 용어순화 및 서식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1.~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서식에 성별항목 추가함)

거창군 고시 제2017 - 88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7. 12.

거 창 군 수

1.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 거창 및 가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6개 자연마을
2. 환경정비구역 지정 현황

보호구역명	자연마을명	위치 및 면적	비고
거 창	모곡마을	동변리 98-4 외 365필지 (96,701m ²)	
	사마마을	서변리 484-4 외 164필지 (69,713m ²)	
	동산마을	대동리 253-1 외 141필지 (146,203m ²)	
	양평, 노혜마을	양평리 370 외 524필지 (243,581m ²)	
가 조	역촌마을	장기리 1586 외 164필지 (87,125.8m ²)	

3. 지형도면 도서: 도면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4. 기타사항

- 관련 도서는 거창군 수도사업소, 거창읍사무소 개발과, 가조면사무소 개발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940-842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붙임: 지번 조서 각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7. 1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달맞이길 119 외 4건(부여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77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339	2009-07-02	2017-07-1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53-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62-48	2011-12-07	2017-07-12	감악산을 넘어 가는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498-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달맞이길 119	2009-04-01	2017-07-12	달이 마을앞 성삼봉을 비춘다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65-9, 78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셋단길 37	2009-12-28	2017-07-12	셋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214-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원성기1길 69	2009-12-28	2017-07-12	성기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분묘개장 공고(2차)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수량	개장사유	비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20번지	4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편입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2번지	5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4-17번지	1기		

2. 개장사유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3단계 조성사업 편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거창군이 지정하는 장소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2017. 7. 10 ~ 2017. 8. 28(50일간)

6. 신고 및 연락처 : 경상남도 거창군 환경과(055-940-3502)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위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나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 분묘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거창군수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에 계획된 「거창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94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거창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94호선)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142.0m, B=6.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02-45번지 외 1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6)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691	1,075					
1	거창읍 대동리	88-3	전	450	56		국 (재무부)			
2	“	88-113	대	67	67		거창군			
3	“	88-139	대	12	12		거창군			
4	“	88-12	구	922	227		국 (농림수산부)			
5	“	88-51	대	69	69		거창군			
6	“	88-142	대	50	50		거창군			
7	“	965-5	도	73	14		국 (건설부)			
8	“	102-39	대	106	106		거창군			
9	“	103-3	대	30	30		거창군			
10	“	88-141	대	29	29		거창군			
11	“	88-140	대	1	1		거창군			
12	“	88-143	대	44	44		거창군			
13	“	88-48	대	60	60		거창군			
14	“	102-18	대	3	3		거창군			
15	“	102-44	대	33	33		거창군			
16	“	102-42	대	3	3		거창군			
17	“	102-45	대	6	6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8-5	김종이			
18	“	102-43	대	66	66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8-5	김종이			
19	“	103-6	대	150	150		거창군			
20	“	103-11	잡	4	4		거창군			
21	“	103-12	잡	42	42		거창군			
22	“	102-17	대	3	3		거창군			

○ 보상조서(지장물)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거창군 대동리	102-43	주택	블록강판기와9*5	45	m ²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5	김중이	
2			주택	블록강판기와6*3	18	m ²	“	“	
3			화장실	블록판넬	6	m ²	“	“	
4			창고	블록판넬3*5	15	m ²	“	“	
5			창고	블록스레트3*1	3	m ²	“	“	
6			가추	스레트,2*1.5	3	m ²	“	“	
7			마당	-	50	m ²	“	“	
8			장독대	-	3	m ²	“	“	
9			수도	-	1	식	“	“	
10			화단	-	8	m ²	“	“	
11			동백나무	20년	1	주	“	“	
12			오가피	20년	1	주	“	“	
13			감나무	40년	1	주	“	“	
14			단풍나무	10년	1	주	“	“	
15			연산홍	5년	10	주	“	“	
16			비자나무	7년	1	주	“	“	
17			꽃사과	10년	1	주	“	“	
18			제피나무	10년	1	주	“	“	
19			화장실	블록판넬2*2	4	m ²	“	“	
20			우물	-	1	식	“	“	
21			가추	판넬	4.5	m ²	“	“	
22			가추	강판	9	m ²	“	“	

순 번	소재지	지 번	물 건 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 명	
23			우물	-	1	식	“	“	
24			담장	-	25.5	m ²	“	“	
25			대문	철재,목재	2	식	“	“	
26			포장	-	28	m ²	“	“	
27			나무 물건 가격	증가분	1	식	“	“	
28		103- 6	주택	벽돌 및 블록조스레트	49.6	m ²	소유주 불명		
29			주택 (부속사)	블록조스레트 8.6*5	43	m ²	소유주 불명		